

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

건축주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
대상 건축물	[] 건축허가 번호	
	[] 건축신고 번호	
	건축물 소재지	
직권 철거 내용	직권 철거 사유	
	철거 예정일	
	그 밖에 필요한 내용	

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등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직인